

'20년도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계획

2019. 1. 24



환 경 부
폐자원에너지과

I.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·운영 현황('18.12월 현재)

□ 부처별 및 운영 주체별 현황

○ (환경부) 총 102개 시설 중, 공공시설은 101개소, 민간시설은 1개소

○ (농림부) 총 5개 시설이 모두 민간시설

(단위 : 톤/일, 개소)

구 분	합 계			환 경 부			농림축산식품부		
	계	공 공	민 간	소계	공 공	민 간	소계	공 공	민 간
시설용량	59,824	58,920	904	59,320	58,920	400	504	-	504
시 설 수	107	101	6	102	101	1	5	-	5

□ 통합·단독시설별 현황

○ 총 107개 시설 중, 통합시설은 31.8%인 34개소, 단독시설은 68.2%인 73개소

(단위 : 개소, %)

구 분	계	통합시설	단독시설			
			소계	음식물	가축분뇨	하수찌꺼기
시설수	107	34	73	27	12	34
(비율)	(100)	(31.8)	(68.2)	(25.2)	(11.2)	(31.7)

※ 통합시설 : 음식물+가축분뇨, 음식물+하수찌꺼기, 음식물+가축분뇨+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시설

Ⅱ. '18년도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·실태 평가

□ '18년도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·실태 평가

- (목 적) 국고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처리시설의 운영실태 조사·평가 실시
 - (기 간) ' 18. 2월 ~ 7월
 - (대 상) 폐자원에너지과 소관 25개시설(통합시설 4, 단독시설21(음식물 8, 음폐수 13))
 - (평가결과)
 - 설비하자, 운영기술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, 지속적인 설비보완, 기술진단·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단계로 진입
 - 통합처리시설의 운용 효율* 및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나, 향후에는 통합 처리시설로 시설개선 또는 신규설치 필요
- * **음식물류 40%**를 가축분뇨 등과 **통합처리시 최대 효율**(환경과학원, '15.12월)

Ⅲ. 통합 바이오가스화사업 추진관련 주요 정책방향

□ 통합처리시설 신규사업 등 우선 반영

- 현지상황 및 지자체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**통합처리시설에 대해서 국고지원 우선 반영**(추후에는 단독시설은 국고지원 제외 예상)

□ “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·운영 지침” 제정(’19년 중)

□ 통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**표준사업비(단가 등) 재 산정** 예정

- 제정되는 지침에 통합시설 설치에 대한 표준사업비를 새로이 적용 할 예정
 - 전처리시설, 본처리시설, 후처리시설 등 처리공정별 표준사업비 제시
 - 향후 각 처리공정별로도 국고지원에 대해 검토 예정

※ 통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리물질별 관리 부서로(음식물-폐자원에너지과, 가축분뇨-유역총량과, 하수찌꺼기-생활하수과)로 각각 사업계획서(예산신청서 등) 제출 필요

□ 통합화 관점의 사업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**타당성 · 충실성 · 적시성 등 검토 강화**

- 『계획수립 → 설계 · 시공 → 운영 · 관리』 전 과정에 대한 검토 강화(국고지원 여부 결정 등에 활용)

□ “**설계 · 시공 → 운영**” 관점으로 사업 추진방식 변경

- 지자체별로 「**바이오가스화사업 추진 T/F***」 구성하고, “**설계 · 시공 → 운영**” 관점(설계 · 의무운전 등에 운영인력 참여 · 자문)으로 사업 추진

* 음식물, 가축분뇨, 하수찌꺼기 등을 통합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

구분		설 계	시 공	의무운전	위탁 운영
사 업 추 진 체 계	기 존	용역사 or 건설사+용역사	건설사	건설사(3년)	운영사 or 건설사
	개 선	(기존)+자문(운영) *운영 기술자 자문 의무화	건설사	전문 운영사*(3년) *전문 운영사가 의무운전 시행	전문 운영사
	개 선 사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설계) 운영 기술자의 운영 노하우를 실시설계에 반영 · (의무운전) 전문 운영사의 의무운전 수행으로 안정적 운영 및 시설보완 가능 · (운영) 전문 운영사의 운영으로 가스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 증대 			

* 운영기업으로서,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실적을 보유하거나 또는 운영실적이 있는 기술자를 보유한 기업

IV.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·운영 지침(안) 주요내용

- 『계획수립 → 설계·시공 → 운영·관리』 전 과정에 적용하는 행정지침
- 사업계획 수립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“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심의위원회”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“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위원회”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·운영비 표준화 테이블
-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 기준
- 예산(국고보조, 융자지원 등) 편성·집행·관리·정산 업무에 관한 사항
- 부처별·시설별 국고지원비율 조정·적용에 관한 사항
-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·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등

※ 환경부 및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지침으로 제정 예정이며, 통합시설의 기술 진단 방법·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 마련 예정

V. 향후 계획

-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·운영 지침(안) 관계기관 의견수렴
 - 유역(지방)환경청, 시·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, 기업체 등에 대하여 의견수렴
 - 관계기관 설명회 및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인 의견수렴 등

감사합니다.